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3981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67,42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31.부터 2023. 4. 13.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20,067,420원에 대하여는 2022. 9. 16.부터 2023. 4.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67,42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20,067,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란 상호로 광고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1. 10. 19.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40,067,42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본인 B는 D으로부터 매입한 옥외광고 자재 관련 결제대금 40,067,420원을 상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에는 위 40,067,420원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0. 30.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067,420원에 관한 이행기의 기재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40,067,42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67,42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0. 31.부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나머지 20,067,4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9.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의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